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 2023년 향촌동 행정복지센터 -
자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사 천 시
공 보 감 사 담 당 관



- 2023년 향촌동행정복지센터 - 자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사천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은 **향촌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I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2023. 3. 21.(화) ~ 3. 23.(목) <3일간>
- 감사반: 감사팀장 외 4명
- 감사범위: 2021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각종 지시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사항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사항과 회계질서 확립
 - 주민등록, 인감, 세외수입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
 - 각종 사업의 추진 및 공사 시공의 적정성 등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1. 기본현황('23. 3월 기준)

(단위: 명)

통(리)반수		세대수	인구수			조직단체 현황						
통(리)	반		계	남	여	통장협의회	주민자치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연보호	체육회
20	81	3,426	6,764	3,536	3,228	20	38	30	15	20	27	59

[자료: 사천시 누리집]

2. 공무원현황('23. 3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6	1	2	3	7	3
현원	16	1	2	3	4	6

[자료: 사천시 누리집]

Ⅲ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괄

(단위: 건, 명, 천 원)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계	주의	시정	개선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징수	세입
18	13	5	-	5	-	1	4	6,702	6,693	9	

◆ 처분요구사항

1.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근무지외 국내출장시 정액으로 지급하되,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하나,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한 출장자에게 일비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지 않았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과다 지급된 여비 “회수” 조치 요구

2.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자 미지정

- ▶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실·과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대리하도록 하여야 하나, 회계관계 공무원(지출원)이 휴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지급명령 승인 처리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3. 통장관리 업무 소홀

- ▶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통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력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하나,
- ▶ [별지 서식]에 따른 이장·통장 임명·해임 등록 대장을 미작성하였고, 구비서류인 이력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통장 임명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4. 주민등록증 등기 수수료 관리 소홀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 ▶ 주민등록증 등기 수수료를 민원인으로부터 영수한 즉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납입하여 관리하지 않고 민원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월별로 일괄 납입 처리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5. 건설공사 시공자격 검토 소홀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주요 공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 내용을 숙지한 후 주된 공정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 “□□□□ ○○○○○ ◎◎사업” 외 *건을 계약하면서 해당 사업의 주된 공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수의 계약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훈계·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및 실무담당자 및 책임자 “훈계” 및 “주의” 조치

6. 건설공사 감독 및 검사, 정산 업무 소홀

- ▶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를 감독·검사시에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 또는 시공방법에 따라 계약의 이행내용을 정확히 감독 및 검사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재시공,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 “◆◆◆◆ ⊕⊕⊕ ▣▣▣ 공사 외 *건”을 계약 체결하여 준공처리 하면서 공사중 또는 준공검사 시 정산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조치 요구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소홀

-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안전관리비 부당 청구액을 확인하여 감액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조치 요구

8. 건설폐기물처리비 미정산

- ▶ 건설 현장 발생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검사 시에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의 이행내용을 정확히 감독 및 검사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재시공,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 “○○○ ■■■■■ 공사”에 현장 발생 폐기물 처리를 포함하여 공사 발주한 후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서 등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액을 확인하여 감액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 조치 요구

9. 환경관리비 미계상

-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나, “●●● ■■■■ ○○○ 사업” 외 **건 예정가격 작성 시 환경관리비를 미계상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0.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행사운영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 용역이 가능함에도, 과업 내용이 단순 물품 구입·설치, 장비 임차임에도 불구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 ◆◆◆◆ ●●●” 행사를 진행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1.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반환 안내 및 회수 소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 중 사망자에 대하여 부당 사용이 없도록 사망한 장애인의 가족 등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안내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후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장애인 사망자 **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안내를 소홀히 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미회수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2. 경로당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리 소홀

- ▶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관리 지침」에 따라 관광성 경비, 일반적 식대 등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물품구입비나 간담회비(식비), 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 ▶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정산을 함에 있어 영수증을 미첨부하거나,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사용품목을 알 수 없는 것이 있으며, 물품 구입 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3.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업무 소홀

-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를 사후관리하면서 모니터 대상 가구별로 상담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모니터 상담을 시행하고 상담 결과를 등록해야 하나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 **명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모니터링 실적을 등록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4.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업무 소홀

-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처리를 하면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처리하거나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내부결재를 통해 면제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려면 동의서를 통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5.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

-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고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수수료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나,
- ▶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재발급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면제대상 여부를 조회하여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시정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를 추가 징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요구

16.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업무 소홀

-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신청에 대해 신청서가 아닌 확인서에 수입증지를 소인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동의를 받아 입증자료를 조회해야 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입증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나,
-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 신청에 대해 신청서에 수입증지를 소인하였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없이 입증자료를 조회하여 발급하는 등 전입세대열람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7. 인감 관련 업무 소홀

- ▶ 「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위임 발급할 때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하고, 인감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며, 인감을 등록한 자가 주소를 변경했을 때 3일 이내에 인감을 신거주지 증명청에 이송해야 하나,
- ▶ 인감증명서를 위임 발급 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미기재하였고 인감신규등록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인감변경신고에 대하여 수수료를 무료 처리하였으며 주소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 3일을 초과하여 인감대장을 이송하는 등 인감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

18.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

- ▶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가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나,
- ▶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의무기재사항이 기재 되어 있지 않거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요구사항: 주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요구